

2019년 제2회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9. 04. 30(화) 11:00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참석임원: 이사 총 10명중10명, 감사 1명 참석
대표이사 장영순, 상임이사 노희원, 이사 이상주,
이사 홍인식, 이사 이충호, 이사 황금복, 이사 신진상,
이사 권도국, 이사 방영순, 이사 고윤순, 감사 하상준.
4. 심의안건: 제1호 2018학년도 인천예림학교 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2호 2019학년도 인천예림학교 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경안
제3호 2019년도 행인한 제1차 세입세출 추경안
제4호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정관 일부 개정안
제5호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예규세칙 개정안
5. 회의내용
 - 1) 성원보고
 - 장영순의장 : 재적이사10명 중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 2) 전차회의록 접수승인
 - 장영순의장 : 간사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케 하고 이의여부를 물은 결과, 이사 전원이 이의 없다고 하여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선포하다.
 - 3) 감사보고
 - 장영순의장 : 2018학년도 학교회계 결산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요청하다.
 - 하상준감사 : 2019년 4월 10일(수) 하상준, 문덕인 감사가 실시한 인천예림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회계 결산 감사 결과를 보고하다.
 - 장영순의장 : 감사보고에 대한 의견을 묻다.
 - 홍인식이사 : 하상준, 문덕인 감사님께서 인천예림학교 운영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신진상이사 : 홍인식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2018학년도 학교회계감사보고서를 접수하다.
 - 4) 안건심의
 - 제1호 의안 : 2018학년도 인천예림학교 사업실적 및 회계 세입·세출 결산
 - 장영순의장 : 인천예림학교의 2018학년도 사업실적보고와 결산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위정열 교감 김인수실장 : 2018학년도 인천예림학교 사업실적 및 결산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이상주이사 :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실적과 결산을 감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권도국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제1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제2호 의안 : 2019학년도 인천예림학교 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

- 장영순의장 : 2019학년도 인천예림학교 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김인수실장 : 제1차추경예산(안)은 기간제교사인건비 29,618천원, 진로코디네이터인건비 37,483천원, 종일반강사 인건비 105,000천원 등 총 228,426천원이 증가되었음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2019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하였음을 설명하고 이사님들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충호이사 : 보조금, 이월금의 확정에 따른 추경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황금복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제2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제3호 의안 : 2019년도 행인행 제1차 추경 예산(안)

- 장영순의장 : 행인행 제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유준식원장 : 추경 주요사유는 보조금 30,453천원 감액과 이월금의 50,876천원 등 총 29,578천원의 편성 내역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제1차 추경예산(안)은 보조금과 이월금의 확정에 따른 조정안임을 설명하고 의견을 요청하다.
- 권도국이사 : 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조정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홍인식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제3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제4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정관 일부 개정안

- 장영순의장 : 정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윤명호국장 : 2018년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이사회회의록, 학교장 임면에 대한 개정사항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정관일부개정안 제안설명에 따라 의견을 요청하다.
- 권도국이사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지침변경에 따른 개정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홍인식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제4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제5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예규세칙 일부 개정안

- 장영순의장 : 예규세칙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윤명호국장 : 개정안 세부내용으로 손과손보수관리세칙은 [별표1] 관리업무수당의 신설, 예림원인권지킴이단운영세칙은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예규세칙일부개정안 제안설명에 따라 의견을 요청하다.
- 홍인식이사 : 법인의 책임성 강화에 따른 수당 신설과 지침변경에 따른 개정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신진상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제5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6. 폐회

- 장영순의장 : 폐회 동의를 확인한 결과 전원이 찬성하여 11:40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다.

2019. 04. 30.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장영순

상임이사

노희원

이 사

이상주

이 사

이충호

이 사

홍인식

이 사

신진상

이 사

권도국

이 사

황금복

이 사

방영순

이 사

고윤순

감 사

하상준